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1997. 12. 8.

나. 제 안 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1997. 12. 8.

라. 상정 및 일자 : 제57회 부천시의회(정기회) 제7차 재정경제위원회(97. 12. 1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경제국장 박상익)

가. 제안이유

-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세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고지서 등 지방세의 서류송달은 현재까지 통·반장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법적인 근거가 없음. 이를 보완하고자 지방세법과 조례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송달수당을 고지서 매 1건당 500원 이내로 지급(안 제12조의2)
- 지방세법 제70조 신설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위원회를 운영하여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부천시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의 2)
-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의 규정에 재산세의 세율을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재산세율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신설(안 제17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재산세의 세율을 50/1000 범위 내에서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까?	○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재산세의 세율이 지방세법에 정해져 있었는데 이것을 조례에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고지서 송달수수료를 500원 이내로 정한 이유는?	○ 개인균등할 주민세 고지서와 일반고지서간에 차등을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또한 인근 시에서도 500원 이내로 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군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렇게 정하였습니다.

○ 과세전적부심사는 어떻게 하는 것을 말씀하 까?	○ 일반고지서는 해당이 안 되고 탈루, 은닉세원 을 조사해서 과세예고통지서를 해당자에게 보내면 당사자가 이것을 보고 와서 적부심사 를 청구하면 과세전에 적부심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

4. 토론요지

- 가. 찬성토론
- 없음
-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40호
의결년월일	97. 12. 27. (제57회)

제출년월일 : 97. 12. 8.
제 출 자 : 부천시장

□ 제안이유

○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세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 주요골자

- 가. 고지서 등 지방세의 서류송달은 현재까지 통·반장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나 법적인 근거가 없음·이를 보완하고자 지방세법과 조례에 그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송달수당을 고지서 매1건당 500원 이내로 지급(안 제12조의 2)
- 나. 지방세법 제70조 신설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위원회를 운영하여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부천시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3조의2)
- 다. 지방세법 제188조제6항의 규정에 재산세의 세율을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재산세율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신설(안 제17조)

부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본문중 “영 제27조의2”를 “영 제25조”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시세에 관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①영 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송달은 부천시통반설치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통·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통·반장이 교부할 수 있는 서류송달의 대상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의 납세고지서·독

축장 및 최고서에 한하며, 송달은 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한다.

③시장은 송달수량 및 우편요금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 1건당 500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수당은 과세물건소제지를 관할하는 동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통·반장이 송달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 납세자가 주소지를 이전하여 과세물건소제지를 관할하는 동장이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주소지관할 동장이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지방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부천시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제2항중 “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둔다”를 “지방세제분과위원회와 지방세이의신청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둔다”로 한다.

제17조를 제17조의2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세율) 법 제18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 다.

1. 건축물

(1) 주택 :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과 세 표 준	세 율
1200만원 이하	1000분의 3
1200만원 초과 1600만원 이하	3만6천원+12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1600만원 초과 2200만원 이하	5만6천원+1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22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11만6천원+22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0
3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35만6천원+3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0
4000만원 초과	85만6천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0

(2)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50

(3) 영에서 정하는 도시 내에서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녹지지역안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6

(4) 제1목 내지 제3목 이외의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3

2. 선박

(1) 고급선박 : 그 가액의 1000분의 50

(2) 그 가액의 1000분의 3

3. 항공기

(1) 그 가액의 1000분의 3

제22조를 삭제한다.

제2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에 공하는 것을 말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서류송달 수당지급 청구서

(단위 : 건, 원)

교부 월일	교 부 자		세목	서류의 종 류	청 구 내 용			사무장 확 인
	직위	성명			건수	금액	청구인 서 명	
계								

첨부 : 계좌입금 신청서 또는 금융기관 통장 사본 1부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허가 등의 제한) 시장은 영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허가 등을 하지 아 니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납세의무자 및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1.~4. (생략)	제8조(허가 등의 제한) 제25조 1.~4.(현행과 같음)
제9조(징수유예신청) 시세에 관하여 징수유예 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30조의 규정에 의 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징수유예 등의 신청) 시세에 관하여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유예 등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신 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2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①영 제39조의2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송달은 부천시통 반설치조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통·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②통·반장이 교부할 수 있는 서류송달의 대상 은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의 납세고 지서·독촉장 및 최고서에 한하며, 송달은 공무 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한다. ③시장은 송달수량 및 우편요금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 1건당 500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수당은 과세물건소재지를 관할하는 동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시 장은 통·반장이 송달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신설> 제14조(시세심의위원회) ①시세에 관한 이의신청 및 과세표준의 결정 기타 시세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세심의위원회(이하 이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안건을 분장,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u>이의신청분과위원회와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둔다.</u>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	단, 납세자가 주소지를 이전하여 과세물건소재를 관할하는 동장이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주소지관할 동장이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의2(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①지방세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부천시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이하 “적부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로 지명 또는 위촉된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적부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적부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적부심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시세심의위원회) ①..... ②..... 지방세제분과위원회와 지방세이의신청분과위원회, 과세표준분과위원회를 둔다.

현 행	개 정 안														
으로서 다른 분과위원회와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은 그 분과위원회 의결만으로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③~⑥(생략) <신 설>	 ③~⑥(현행과 같음) 제17조(세율) 법 제18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건축물 (1)주택 :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액은 과세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th>세 율</th></tr> </thead> <tbody> <tr> <td>1200만원 이하</td><td>1000분의 3</td></tr> <tr> <td>1200만원 초과 1600만원 이하</td><td>3만6천원+12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td></tr> <tr> <td>1600만원 초과 2200만원 이하</td><td>5만6천원+1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td></tr> <tr> <td>22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td><td>11만6천원+22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0</td></tr> <tr> <td>3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td><td>35만6천원+3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0</td></tr> <tr> <td>4000만원 초과</td><td>85만6천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0</td></tr> </tbody> </table> (2)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50	과세표준	세 율	1200만원 이하	1000분의 3	1200만원 초과 1600만원 이하	3만6천원+12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1600만원 초과 2200만원 이하	5만6천원+1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22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11만6천원+22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0	3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35만6천원+3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0	4000만원 초과	85만6천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0
과세표준	세 율														
1200만원 이하	1000분의 3														
1200만원 초과 1600만원 이하	3만6천원+12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														
1600만원 초과 2200만원 이하	5만6천원+1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0														
22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11만6천원+22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30														
3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35만6천원+3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0														
4000만원 초과	85만6천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0														

현 행	개 정 안
	(3)영에서 정하는 도시 내에서 도시계획법 및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된 주거지역 안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 : 그 가액의 1000분의 6 (4)제1목 내지 제3목 이외의 건축물 : 그 가 액의 1000분의 3 2. 선박 (1)고급선박 : 그 가액의 1000분의 50 (2)제1목 이외의 선박 : 그 가액의 1000분의 3 3. 항공기 그 가액의 1,000분의 3
제17조의2(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생략)	제17조의2(비과세 적용자의 신고사항)(현행 제17 조와 같음)
제22조(중과대상지역)법 제188조제1항제2호제3 목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 다.	<삭제>
제28조(과세표준과 세율) ①(생략)	제28조(과세표준과 세율) ①(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 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면허를 받아 일반의 수 요에 공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업용”이라 함 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에 공 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에 공 하는 것을 말한다.	②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 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 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의 수요에 공하는 것을 말하 고, “비영업용”이라 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 업용 이외의 용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 공단체가 공용에 공하는 것을 말한다.